「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2026. 5. 1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한국씨티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신용카드(이하 "카드"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 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회원)

① 회원은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으로 구분합니다.

② 본인회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한국씨티은행에 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은행으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③ 가족회원이란 본인회원이 지정하고 대금의 지급 및 그 밖에 카드이용에 관한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분으로서, 이 약관을 승인하고 은행으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제2장 카드의 발급 및 관리 등

제3조(카드의 발급)

①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이 은행에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은행은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 및 발급관련 절차 등을 거쳐 발급합니다.

② 카드모집자가 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자금의 융통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대출금리, 연체료율 및 취급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을 감추거나 왜곡하지 아니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③ 은행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청인에게 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카드의 거래조건 및 연회비 반환사유, 반환금액 산정방식, 반환금액의 반환기한 등을 알리고 이용계약에 따른 계약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3조의2(가족카드 발급 등)

① 본인회원은 은행에 가족카드 발급(갱신 · 대체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은 관련 법규 등에 따라 본인회원의 신용상태, 가족관계, 가족의 동의 등을 확인하여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② 가족카드는 본인회원의 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배우자 포함),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비속, 형제자매에게 발급됩니다.

③ 은행은 가족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품설명서에 명시하고 카드를 발급할 경우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에게 안내합니다.

1. 가족카드 연회비 및 가족카드 발급 가능매수
2. 가족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및 제공 범위
3. 가족카드 연말정산 관련 사항
4. 휴대폰 메시지 및 카드대금 청구서 제공사실 및 방법
5. 가족카드 포인트 양도방법
6. 이혼, 사망, 파양 등 가족관계 변동시 본인회원 및 가족회원의 은행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7. 제6호의 가족관계 변동이 되었음에도 가족카드를 정지시키지 않는 경우 의도하지 않는 카드사용 및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8. 본인회원이 요청할 경우 가족회원의 동의없이 가족카드가 한도감액 · 정

지 ·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기타 가족카드 이용정지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④ 본인회원은 본인회원이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가족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인회원이 발급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은행이 집니다.

⑤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카드의 한도감액 · 정지 · 해지를 은행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은행은 본인회원의 요청에 따라 가족카드 한도감액 · 정지 · 해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에게 알립니다.

⑥ 은행은 제30조에 따라 가족회원에게 본인회원의 미상환 채무를 추심할 수 없습니다.

⑦ 본인회원은 은행이 정하여 은행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회원 명의의 계좌를 가족카드 이용대금 자동이체결제계좌로 지정해 줄 것을 은행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가족회원의 동의를 받아 처리합니다.

제4조(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① 카드의 유효기한은 카드표면에 표시됩니다.

② 은행은 회원이 카드의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카드의 남은 유효기한까지는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③ 은행은 유효기한이 도래한 카드에 대해서는 회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에 대해 카드를 갱신 발급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 대해서는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④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회원은 은행이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휴대폰 메시지란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와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를 통한 모바일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모바일 메시지의 경우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데이터 비용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로 대체전송됩니다. 이하 같습니다.),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이의제기 기간 내에 회원으로부터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아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로 갱신 또는 대체발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 또는 대체발급의 거절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거절이 예상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은행이 거절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본 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갱신 또는 대체발급의 거절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사실
2. 대체발급 시 기존상품과 대체상품의 차이(적립 및 할인 혜택, 이용조건 및 한도 등)
3.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 회원이 제1호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⑤ 갱신 또는 대체발급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이 서면,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전화로 동의한 경우에만 갱신 또는 대체발급합니다. 회원은 동의 없이 갱신 또는 대체발급된 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동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은행이 집니다.

⑥ 카드가 갱신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5조(카드의 관리)

①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카드의 소유권은 은행에 있으므로 회원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 · 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유효기한이 지난 카드 및 갱신 · 대체 · 재발급으로 인한 종전 카드를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즉시 은행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분리해서 폐기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이행을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연회비 청구)

① 연회비는 은행이 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및 회원관리시스템 유지 등 회원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기본연회비와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휴연회비로 구성됩니다. 기본연회비는 회원별 혹은 카드별로, 제휴연회비는 카드별로 청구됩니다.

② 은행은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월납 등 분할납부 청구도 가능합니다.

1. 분할납부 1회차 회비가 카드발행 및 배송에 소요되는 금액보다 큰 경우
2. 회원이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카드발행 및 배송에 소요되는 비용 이외에

회원에게 바우처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상환 청구금액이 없는 경우

③ 최초 연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와 갱신발급시 은행의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최초 연도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④ 은행은 카드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회원에게 연회비 청구기준 및 청구금액 등을 안내합니다.

⑤ 은행은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6조의2(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① 회원이 유효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은행과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회원의 카드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 카드의 발행 · 배송 등 카드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2.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② 은행은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③ 은행은 제2항에 따라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할 때에는 그 연회비 반환금액의 산정 방식을 함께 해당 은행과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④ 은행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지연 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7조(카드이용 정지)

① 은행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제7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카드이용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메시지 또는 전화로 이용 정지 예정사실을 회원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은행이 과실 없이 회원의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통신사의 사정 등에 따라 휴대폰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정지 당일에 전자우편(E-MAIL)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카드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사유 발생 당일 고지).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3.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4.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기타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5. 미성년자인 회원의 법정 대리인이 은행에 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
6.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7. 이민, 구속, 사망 등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② 은행 또는 회원이 이용한 업체의 전산망이 외부로부터 해킹 등을 당하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은행에 대하여 카드사용의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은행은 회원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카드 사용의 일시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은행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카드 사용이 정지된 이후 해외에서 은행의 승인 없이 전표가 매입되는 거래(이하 "해외 무승인매입"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매출전표가 매입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해외 무승인매입에 따른 카드이용대금 청구예정 사실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④ 은행은 회원의 카드이용 정지 상태가 해소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당일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7조의2(카드의 한도감액)

은행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이용한도를 감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대폰 메시지 또는 전화로 한도감액 예정사실을 회원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은행이 과실 없이 회원의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통신사의 사정 등에 따라 휴대폰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도감액 당일에 전자우편(E-MAIL)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이용한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사유 발생 당일 고지).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3.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4.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기타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5.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6. 구속 등으로 회원의 채무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의3(카드의 해지)

① 은행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영업일 전에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은행은 별도의 안내 없이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2. 파산, 개인회생 신청 등의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3. 이민, 사망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회원의 고의ㆍ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② 회원은 은행에 대하여 카드사용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은행은 회원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카드사용의 해지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은행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카드사용이 해지된 이후 해외 무승인매입이 발생한 경우 매출전표가 매입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해외 무승인매입에 따른 카드이용대금 청구예정 사실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은 즉시 카드를 폐기하고, 은행은 그날까지의 채무 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의4(휴면카드 연회비 반환 및 해지)

① 은행은 회원의 카드가 카드 최종 이용일(발급 후 카드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일 기준)로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이하 '휴면카드'라 함)로 된 경우, 카드가 휴면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 전자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카드회원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회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정지되고 제5항에 따라 갱신 또는 대체발급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가족카드 중 본인회원의 카드가 휴면카드이나 가족회원의 카드가 휴면카드가 아닌 경우 본인회원의 카드
2.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기능(하이패스카드), 현금인출 기능 등 카드에 부가된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휴면카드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서면, 전화, 전자문서로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은행은 카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하여야 합니다.

③ 은행은 제1항에 따른 통보가 회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은행에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즉시 카드의 이용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다음 연도 연회비 청구일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제6조의2

에 따른 연회비 반환규정을 준용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반환금액은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⑤ 제3항에 따라 이용정지된 신용카드는 유효기간 종료 시 갱신하거나 대체 발급할 수 없으며, 이용정지 상태에서 카드가 부정사용됨으로 인해 회원이 피해를 입을 경우의 책임은 은행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은행이 부담합니다.

제3장 카드의 이용

제8조(카드의 이용 등)

① 회원이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은행 또는 은행과 제휴한 기관의 가맹점(이하 "국내가맹점"이라 함), 국외의 경우에는 은행과 제휴하고 있는 외국기관의 가맹점(이하 "해외가맹점"이라 함)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비대면거래에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카드의 제시와 서명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은행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으로 위장한 현금융통 또는 그 밖의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은행은 회원 및 가맹점의 신용도, 법령 규정, 감독기관의 지시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특정가맹점(국내 및 해외가맹점 포함)에 대한 카드사용 또는 카드 이용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9조(카드의 해외이용 등)

① 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하거나 무역외 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에 대해서는 해외카드사의 규약에 따르며, 은행은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경우 해당 규약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③ 국내 및 해외 사용 겸용으로 발급된 카드는 해외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IC칩 비밀번호(PIN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카드의 이용 및 일부 해외가맹점에서의 이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0조(카드의 이용한도)

① 카드 이용한도는 신규가입을 할 경우 회원이 신청한 금액과 은행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한 후 회원에게 별도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② 은행은 카드의 유효기한 이내 및 유효기한 경과 후 카드를 갱신하여 발급할 경우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한 후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한도를 조정하여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은행은 이용한도 증액 시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증액하고 회원에게 이용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됩니다(회원이 사전에 이용한도 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은행에 신청한 경우는 제외). 다만, 종전 이용한도 또는 회원이 과거 신청한 이용한도까지 증액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한 후 증액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에 따라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

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⑤ 은행은 이용한도를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ARS), 안내전화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1조(할부구입)

① 회원은 은행으로부터 할부판매를 지정받은 국내가맹점에서 은행이 정한 할부 가능 금액 범위에서 할부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할부기간은 은행이 정하여 통보한 최장기간 이내에서 회원이 지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구매상품 또는 제공받은 서비스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는 할부계약에 한하여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은 가맹점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현금가격의 분할대금에 월간 수수료를 더한 할부금을 할부기간동안 결제하여야 합니다.

④ 최초 할부금에는 분할잔여액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⑤ 은행은 연간 할부수수료율 및 100원당 부담하는 할부개월별 수수료를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⑥ 은행은 은행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회원의 개인신용평점 하락, 금융회사 대출 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도 변동, 국가경제 ·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할부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⑦ 은행은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더라도 같은

법에 따른 철회 · 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회원이 알 수 있도록 휴대폰 메시지로 그에 관한 유의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4개월 미만의 거래와 자동차, 백화점, 대형마트, 통신, 보험, 국세 · 지방세, 병원에서의 거래는 제외) 다만, 회원이 안내를 명시적으로 거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할부철회권)

① 회원은 할부계약서를 받은 날(단, 할부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할부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 · 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2.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냉동기, 전기 냉방기(난방겸용인 것을 포함),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3.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4.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해당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5. 회원이 상행위를 위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6. 제31조에 따른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

② 회원이 제1항에 따라 할부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철회의 의사가 적힌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제13조(할부항변권)

① 회원은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가가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 20만원 미만의 거래, 회원의 상행위를 위한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제외됩

니다.

1. 할부계약이 불성립 · 무효 · 취소 ·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2.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3.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할부항변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② 회원이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여 은행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합니다.

③ 은행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접수된 소비자의 항변권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는 경우 7영업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나머지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

④ 은행은 소비자가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항변권 관련 분쟁이 해결될 때(소송 중이거나 항변권 대상이 아닌 경우 제외)까지는 해당 소비자를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⑤ 회원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해당가맹점과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14조(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은 회원이 카드 회원 가입 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카드

대출(현금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지 않은 회원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절차에 따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은행이 부여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한도내에서 자동화기기, 전화, 인터넷 등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제1항의 거래를 이용할 경우 은행은 회원이 은행에 신고한 비밀번호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신청시 입력한 비밀번호가 같을 경우에 한하여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신청금액을 즉시 지급하거나 은행에서 따로 정한 기일 내에 회원의 카드결제계좌 (또는 회원이 지정한 회원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드립니다.

④ 은행은 제11조제6항과 같은 사유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으며 회원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에 대해서도 제23조에서 규정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금리인하요구권과 같이 은행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자동화기기,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는 경우 제4항의 수수료 외에 은행 또는 은행 제휴기관 등이 정하는 이용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5조(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

① 은행은 은행이 정한 가맹점에서 회원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결제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가치를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으로 적립 또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포인트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 · 부속명세서 등에 명시하고 카드를 발급할 경우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1. 포인트의 적립 · 사용 · 소멸 등 포인트제도에 관한 내용
2. 포인트적립률, 사용대상, 사용가능 최소적립기준, 유효기한, 연간 적립한도 등에 관한 내용
3. 포인트 적립 제한(연체, 적립한도초과 등) 및 적립된 포인트 사용 제한(연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
4. 제9항 및 제10항에 대한 포인트의 종류
5. 피상속인의 포인트 상속절차 및 상속 포인트 사용방법

③ 제2항의 경우 은행은 회원의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이 월별한도까지 도달한 이후 회원이 카드결제를 취소하는 경우, 결제 취소로 적립한도가 복원되기 이전에 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은 취소내역을 반영하여 월별한도 내에서 정산하여 제공합니다.

④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은행의 휴업 · 파산 · 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1의2. 제휴업체의 휴업 · 파산 · 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 ·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같은 종류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2. 제휴업체가 은행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3.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⑤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모집인,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카

드 발급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1. 해당 카드가 출시된 시기
2. 제4항에 따라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는 각각의 경우

⑥ 은행이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1. 제4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 사유발생 즉시
2. 제4항제3호 :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

⑦ 은행은 회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사용방법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6개월 전부터 매월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합니다.

⑧ 회원이 무이자할부 결제 후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결제대금을 미리 은행에 지급한 경우에도 은행은 포인트를 적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은행은 무이자할부 기간이 경과된 일수만큼 포인트를 차감한 후에 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⑨ 은행은 카드해지시 회원의 선택에 따라 미상환 카드대금을 결제하거나 회원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회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⑩ 포인트는 회원이 결제한 금액대로 반올림 또는 올림되어 적립됩니다. 다만, 가맹점이 부담하여 적립하는 포인트는 은행이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⑪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신청 등을 통해 은행이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보유한 포인트액, 포인트 상속방법 등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연고가 없는 등 은행이 정당한 사유로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⑫ 은행은 포인트 현금성 사용, 포인트 자동 사용(결제대금 차감) 등 회원의 포인트 이용의 편의성 향상에 노력해야 합니다.

⑬ 회원이 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잔여포인트는 포인트 유효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나, 회원이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은행은 회원이 탈회(회원의 유효한 카드가 없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상태)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한 경우 탈회 또는 삭제 전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기타 금융 관계법 위반으로 인한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 요청인 경우, 해당 은행은 잔여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15조의2(전월실적 안내)

은행은 회원의 카드 상품별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전월실적 및 전월실적 인정기준, 이에 포함·제외되는 항목들을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폰 앱(App)을 통해 안내하고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회원에게 전월실적 확인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제15조의3(카드 이용내역 표시)

은행은 회원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업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이용대금명세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카드 이용내역에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하위사업자의 상호를 표시하여 드립니다. 단, 결제대행업체의

전산개발 지연 또는 하위사업자의 폐업 등의 사유로 즉시 표기가 곤란할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부터 표시하여 드립니다.

제4장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제16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외에 은행이 본인회원에게 제공하는 자금융통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이자율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17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동의)

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회원이 카드 회원 가입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을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 후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유무선 통신에 의한 방법(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내용 답변 녹음 등 증거자료 확보 · 유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18조(이용계약의 성립)

①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계약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에 동의한 회원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은행은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의 주요 내용과 신용도 변동

가능성을 대출 실행 이전에 회원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③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계약 성립 이후 은행은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은행이 대출금액을 지급한 이후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취소사유 이외의 사유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약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청 및 본인확인조치)

① 회원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할 경우, 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은행에 등록된 회원의 전화(휴대전화 포함)를 이용하는 방법
2. 회원과 대면하여 확인하는 방법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실명거래의 확인방법 중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이 경우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적용하여야 하며, 바목 및 사목의 방법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음)

가. 회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원본을 사진촬영 또는 스캔한 경우를 말한다)을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전자우편(E-MAIL), 파일 업로드 등의 방식으로 제출받는 방법

나. 은행 또는 은행의 직원이 영상통화(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 등을 활용하여,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한 사람이 회원과 같은 사람인지 여부 및 요청 시점에 실제로 얼굴 등을 촬영하여 영상을 제출하는 것인지 여부를 각 시점마다 확인하는 방법을 포함한다)를 통해 회원의 영상과 회원이 제출한 실명확인증표 상의 사진을 비교ㆍ대조하는 방법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회원의 실명확인증표를 확인하는 방법

라.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되어 있는 회원의 기존 계좌로부터 소액을 이체

받거나, 은행이 회원에게 소액을 이체하는 방식 등으로 확인하는 방법

마. 회원이 사전에 은행에 등록한 생체정보와 회원이 제시하는 생체정보를 비교하거나, 회원의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실명확인을 마치고 회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 등 신원정보를 분산원장기술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저장한 정보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

바. 공인인증서, 아이핀(I-PIN), 휴대전화와 같이 인증기관 등에서 신분확인 후 발급한 파일, 아이디·비밀번호, 전화번호를 활용하는 방법

사.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주소, 직장 정보 등)와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하는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은행이 회원의 동의를 받아 출국 정보를 조회하거나 회원으로부터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받아 이용자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본인확인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③ 은행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할 때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한다는 취지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청의 금융거래 내용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20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

① 은행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에 동의한 회원에 대하여 가처분 소득,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기간,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은행의 내부기준에 따라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을 부여합니다.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른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을 부여하는 경우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월 채무원리금 상환액이 회원의 장기카드대출(카드

론) 이용신청일 이전 3개월 평균 카드이용 가능 한도의 미사용금액 이내가 되도록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합니다.

③ 회원은 은행이 산정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1조(대출금 상환)

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회원이 선택하여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거치 후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마이너스방식 등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②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매월 균등한 원금과 대출 잔액에 따른 이자를 회원이 은행과 약정한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③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균등한 금액을 회원이 은행과 약정한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④ 거치후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일정기간(거치기간)에 이자만 납입하다가 이후 매월 균등한 원금과 대출 잔액에 따른 이자를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⑤ 거치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일정기간(거치기간)에 이자만 납입하다가 이후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균등한 금액을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⑥ 만기일시상환방식은 원금은 대출 기간이 끝나는 날에 전액상환하며, 매월 결제일에 이자금액을 상환합니다.

⑦ 마이너스방식은 대출 기간내에서 차용과 상환을 자유롭게 하되, 대출 기간이 끝나는 날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며, 이자는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마이너스방식 거래 계좌에서 상환합니다.

제22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①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 · 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 · 계산방법 및 지급의 시기 · 방법에 관해 은행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약정 체결 후에는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 ·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행은 회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 · 인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결되어 없어지는 때에는 은행은 해결되어 없어진 상황에 일치하도록 그 율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23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금리인하요구권)

① 회원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회원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에 회원에게 금리인하 심사결과 등을 전화, 서면,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자우편(E-MAIL), 팩스(FAX)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③ 은행은 금리인하요구자의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체결시 회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2.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④ 회원은 은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의 신용상태 변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⑤ 은행은 제1항의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하여 금리인하요구 요건, 신청 및 통지절차 등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알립니다.

제24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 철회)

① 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 철회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대출계약 철회에 대해 회원에게 설명하고 회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제25조(중도상환)

상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상환할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직접 상환하거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결제계좌 또는 은행이 회원에게 부여하는 가상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한 뒤 은행에 상환의사를 표시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당일에 상환할 경우에는 1일의 정상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26조(대출기간 연장)

①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기간의 연장은 기존 약정 내용 및 회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출기간 연장 신청시 은행은 개인신용평점, 연체정보 등 은행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 연장 가능 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 연장이 확정된 경우 대출조건(이자율, 상환방식,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의 심사기준에 의해 대출기간 연장

이 불가한 때에는 만기일에 원금 및 이자를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제5장 대금결제

제27조(대금결제)

① 회원은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자동이체결제방법 또는 은행이 정하는 방법(즉시결제, 송금납부(가상계좌입금 등) 등)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대금결제일은 결제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정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대금결제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은행의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상품설명서 등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②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이용한 모든 카드이용대금은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환산된 후, 카드사용내역이 은행에 접수된 일자의 대외결제 대행은행의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이 적용되어 원화로 회원에게 청구됩니다. 만약, 회원이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내역 또는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사용한 결제내역을 취소하는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은 은행이 부담합니다.

③ 제2항의 청구금액에는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은행에 부과하는 국제브랜드수수료*와 국내 은행이 부과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이 경우 국내 은행의 해외서비스수수료는 국제브랜드수수료를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 (거래미화금액 × 국제브랜드사 이용수수료율) × 전신환매도율
** (거래미화금액 × 각 은행이 정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율) × 전신환매도율

④ 회원은 예금잔액 및 대출한도가 결제금액보다 적어 제1항의 기일에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포함)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넣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다음 계산식의 지연배상금***을 추가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제일 다음 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일로 합니다.

* 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
** 연체이자를 산정할 경우 결제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
*** 지연배상금 = (연체금액-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연체이자율×연체일수/365(윤년은 366)

⑤ 제4항의 '연체이자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은행은 원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존 약정에 따를 때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일시불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무이자 할부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그 외의 경우 :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⑥ 회원은 연체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회원에 대한 은행의 채권 등의 권리의 행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해당 권리 행사에 관한 구체적 세부내역을 나열하고,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사본을 첨부하여 회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⑦ 회원은 가맹점으로부터 거래승인번호가 없거나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및 기타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매출전표를 받았을 경우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대금지급 거절의 사를 서면으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⑧ 회원이 결제금액 전액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든 비용, 연회비, 지연배상금, 상품별 수수료, 이자 등이 원금보다 우선하여 상환됩니다. 다만, 회원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 시, 은행은 회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상환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⑨ 채무변제순서는 연체이자, 정상이자,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변제 이익이 많은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은행이 정한 채무변제순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ARS)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⑩ 회원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⑪ 할부의 경우 회원이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월간단위)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⑫ 제4항 및 제5항의 연체이자율은 은행이 정하여 매월 통보하여 드리며 각종 수수료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은행은 그 초과된 이자상당액을 회원에게 환급합니다.

⑬ 회원이 카드이용대금을 은행의 가상계좌 등으로 직접 입금할 때 입금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은행은 회원이 초과 입금한 금액을 즉시 또는 2영업일 이내에 결제계좌(또는 회원이 지정한 회원명의의 계좌)로 환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산장애, 입금인과 회원명이 다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여 드립니다.

⑭ 회원은 제13항에 따른 환급기한까지는 지연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은행은 환급에 따라 발생하는 타행이체수수료와 같은 비용을 회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⑮ 제13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카드이용대금 결제일에 카드이용대금과 환급금액과의 상계를 은행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⑯ 회원이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은행에 취소매출전표가 접수된 경우 은행은 회원에게 취소된 결제에 대해서는 카드이용대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융통, 기망행위 등 고의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한 취소인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⑰ 은행은 이용대금명세서를 우편,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다만, 회원이 본 항에서 정하는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합니

다.

⑱ 제17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회원이 이용대금명세서를 제공받는 대신 직접 수시열람할 것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회원이 선택하는 시점에 이용대금명세서 열람 방법, 이용대금명세서에 이 약관상 안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및 이용대금명세서 수시열람 선택 시에도 이 약관상 이용대금명세서로 통지하도록 한 사항은 서면, 전자우편, 팩스, 휴대폰 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별도 안내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제28조(자동이체결제)

① 은행은 회원의 카드이용대금을 제27조의 결제일에 자동이체결제계좌(단, 통장분실/도난 기타의 사유로 계좌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후의 계좌)에서 예금통장, 지급청구서 없이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자동이체결제계좌가 대출이 가능한 계좌인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결제계좌 개설기관과 회원이 약정한 출금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인출하여 결제합니다.

③ 이용대금결제일 현재 잔액부족으로 은행의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는 때에는 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매 영업일 또는 은행이 정하는 출금일에 결제하지 않은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하여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영업 마감시간(16시)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동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원은 자동납부 업무 마감시간 이후 은행의 홈페이지 등에서 즉시결제 또는 송금납부(가상계좌 입금 등)를 통해 당일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⑤ 제27조제1항의 카드이용대금 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카드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 영업일에 처리합니다.

제29조(기한이익의 상실)

①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은 당연히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은행은 회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사망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90일까지는 지연배상금 미부과)한 경우
2.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인과의 결혼, 연고관계,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3. 파산,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②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회원은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은행은 기한이익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이익의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총 할부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2.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결제금액을 연속하여 2회차 이상 결제하지 않는 경우
3.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원금분할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형식 제

외)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경우
4.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5.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적 거래로 확인된 경우

③ 회원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은행은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회원은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2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압류,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3.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은행에 대한 채무의 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 등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합니다) 및 동법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은행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지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회원에게 도달한 경우 회원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되, 다만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회원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⑤ 은행이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하는 경우 「개인채무

자보호법」 및 동법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통지 내용, 통지 방법 및 예외사유 등 제반 규정을 따릅니다.

⑥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회원이 은행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은행이 분할상환금 · 분할상환원리금 · 이자 · 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은행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제30조(회원의 책임)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의 카드에 관한 행위 및 발생된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가족회원은 가족카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제6장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제31조(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란 회원이 카드이용대금 중 은행과 회원이 미리 약정한 약정(최소)결제비율 이상을 결제하면 다음 달 결제월에 잔여 결제금액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를 합산하여 납부하는 결제 방식입니다.

② 약정결제비율이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 중 은행과 회원이 결제일에 결제를 원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회원은 이용금액의 10% 이상 100% 이하의 범위에서 약정조건에 따라 최소결제비율 이상으로 원하는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최소결제비율이란 회원이 결제일에 결제하여야 할 최소결제금액을 산정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최소결제비율은 10%이상으로 회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최소결제비율은 여러 매의 카드를 소지한 경우라도 회원단위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④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제32조(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신청 및 성립)

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카드 발급시 또는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은행은 회원에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권유하는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설명서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해당 설명서의 주요 내용(수수료율, 최소결제비율 및 약정결제비율, 일시상환 방법 등)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하여 이월잔액이 발생한 경우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음을 회원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전화를 통해 회원에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설명서에 따라 주요 내용을 회원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약정 체결 이후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설명서를 제공합니다.

④ 은행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원에게 설명한 내용을 회원이 이해하였음을 서명,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⑤ 회원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체결 이후 은행은 수수료율, 최소결제비율 및 약정결제비율 등의 내용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이용대금명세서 등 회원과 협의한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⑥ 은행은 회원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에 따라 잔액이 발생한 경우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추가적인 카드이용이 없다는 가정 하에 약정(최소)결제비율에 따라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수수료가 부과되는 첫 번째 달부터 상환이 완료되는 마지막 달을 포함하여 개월수로 표시), 총 수수료금액(해당 회원에게 적용한 최근 월의 수수료율을 적용), 원금잔액 총액(이월 잔액 총액)에 대해 별도로 안내합니다.

⑦ 회원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수수료율에 대해서도 제23조에서 규정한 금리인하요구권과 같이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적용 대상)

① 회원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신청할 경우 은행은 신청회원의 이용실적, 신용상태, 월평균결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대상여부를 결정하며, 동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②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할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 허용된 카드 또는 회원이 보유한 모든 카드(가족카드 포함) 중 은행이 정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국내외 일시불 이용금액에 대해서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할부이용금액 등은 제외합니다.

제34조(약정기간)

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회원이 이용을 신청한 시점부터 해당 카드의 유효기간까지 이용(최장 5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고 약정만 체결한 회원에 대해 12개월마다 동 약정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음을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안내 시 회원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약정이 연장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은행은 약정기간이 도래한 회원에 대하여 약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약정기간 만료 예정사실[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연장가능 회원의 경우에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연장 예정 사실 및 연장기간 포함], 수수료율 등 주요 내용을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보합니다.

③ 전항의 연장가능 회원에게는 은행의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별도 약정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약정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이 기간 중 이의제기하지 않는 경우 회원이 선택한 기존약정 기간 단위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기간이 연장됩니다.

제35조(결제금액)

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회원의 결제금액은 약정(최소)결제비율에 따른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청구원금,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비대상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단,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청구원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청구합니다.

1. 최소결제금액 :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청구원금과 5만원 중 큰 금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 외 금액
2.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청구원금 :

○ {지난달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이달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규이용금액 } × 최소결제비율

3.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약정청구원금 :

○ {지난달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이달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규이용금액 } × 약정결제비율

4.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수수료 :

○ 지난달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율 × 이용경과일수*/365(윤년은 366)

* 이용경과일수 : 지난달 대금 결제일 다음 날부터 이달 대금 결제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② 결제일에 회원이 최소결제금액 미만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연체로 처리되며, 이 경우 회원은 최소결제금액 중 결제하지 못한 금액(이자 제외)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정한 회원이 결제일에 총 청구금액을 결제하지 않고 최소결제금액 이상을 결제한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전환되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④ 약정결제비율과 상관없이 이월잔액이 발생한 경우 은행은 회원에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전환된 이월금액 및 선결제 가능 사실, 수수료율 상세내역을 휴대폰 메시지 또는 전화 등으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고지합니다.

⑤ 약정결제비율과 관계없이 최소결제금액 이상을 결제한 경우 정상결제 처리되며, 잔여 결제대금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잔액으로 자동 이월되어 추후 입금한 경우라도 자동이체를 통해 추가 출금되지 않습니다. 추가결제를 희망하는 경우 회원은 은행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36조(수수료율 등)

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율 또는 연체료율에 대해 은행은 회

원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한도에서 정할 수 있으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체결 후 적용 수수료율 등은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② 은행은 회원의 신용변동, 은행의 조달금리 및 업무처리비용 등 금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회원에게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제37조(최소결제비율 변경)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체결 이후 회원의 연체 등의 사유로 신용상태가 악화되었을 경우 최소결제비율을 상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최소결제비율이 최근 이용중인 약정결제비율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 회원은 변경된 최소결제비율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제38조(계약해지)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계약이 해지됩니다.

1. 회원의 계약해지 요청
2. 회원의 탈회 또는 갱신 탈락 등의 경우
3. 제29조(기한이익의 상실)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은 회원에게 이용금액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회원은 은행의 청구를 받은 즉시 결제하여야 합니다.

제7장 카드부정사용 등에 대한 회원의 책임

제39조(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① 회원이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이하 같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은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 경위, 카드이용일시, 이용내역,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회원이 은행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은행은 분쟁이 있는 금액의 연체를 이유로 회원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④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은행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은행은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은행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은행은 회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40조(카드의 분실 · 도난신고와 보상)

①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은행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면, 유선 등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은행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40조제3항제3호에 따릅니다). 다만, 은행은 제1항의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50만원을 초과하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2만원 이하의 보상처리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한다) 회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의 고의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2. 회원이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맹점이 서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려하였으나 회원 본인의 카드 미서명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나. 회원이 서명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카드를 타인(가족, 동거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5. 회원이 과실로 카드를 노출·방치한 경우(회원의 카드 노출·방치로 인해 가족, 동거인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한다)
6. 회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은행에 분실·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원의 분실·도난 신고 또는 보상신청이 허위로 밝혀지고 그로 인해 은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회원에게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과 은행은 분실·도난 조사에 상호간 성실히 임하도록 합니다.

제41조(위조 · 변조카드 사용 등에 대한 책임)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은 은행에 있습니다.

1. 위조되거나 변조된 카드의 사용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카드의 정보를 이용한 카드의 사용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2.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3.「전자금융거래법」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신용카드업자"로, "이용자"는 "신용카드회원등"으로 본다)

③ 회원은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은행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2조(비밀번호 관련 책임)

은행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를 할 경우 입력된 비밀번호와 은행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

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통신판매, 전자상거래와 같은 거래를 처리합니다.

제8장 개인정보보호

제43조(신용정보의 제공 · 이용 등)

① 은행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용정보를 관련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회원이 제공 ·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회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 제휴업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② 가맹점과 회원 간에 카드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맹점이 회원의 정보를 요구하고 회원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은행은 회원의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가맹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은행은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와 제휴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의 판단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거나 기타 은행에 손실을 입힌 경우
2. 카드의 부정사용 등으로 신용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경우

④ 회원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정정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44조(변경사항의 통지)

①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자동이체계좌, 전자우편(E-MAIL), 가족회원의 가족관계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동이체계좌를 변경할 때에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은행이 과실 없이 회원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이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써 은행으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제9장 보칙

제45조(위반할 경우 책임)

은행과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46조(위법계약의 해지)

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7조(변경승인 등)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은행은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기존 회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 여부, 신·구조문대비표 포함)하고 회원에게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

지,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신·구조문대비표 포함)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2. 약관 개정이 회원에게 유리한 경우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회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즉시)까지 홈페이지 게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3개월 이전부터 매월 알려드립니다.

1. 은행이 할부수수료율,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수수료율,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 각종 요율 또는 연회비를 인상할 경우
2. 은행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결제비율을 변경할 경우
3. 은행이 결제방법, 할부기간 및 횟수 등을 변경할 경우
4. 신용공여기간을 변경할 경우

③ 제2항제2호의 경우 은행은 제2항 외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안내가 가능합니다.

④ 제2항제3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은행은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고 변경예정일까지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또는 은행과 제휴사의 본·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은행의 사정에 따라 회원의 이용대금명세서 수령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 대상 회원에게 우편,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고, 통지 수령 후 이의제기 기간 내에 회원으로부터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동 회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용대금명세서의 수령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이용대금명세서 수령방법의 변경(변경예정 수령방법, 변경예정일자 포함)
2. 통지 수령 후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회원이 제1호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3. 이의제기 기간을 도과한 이후에도 회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용대금명세서 수령방법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 및 변경절차에 관한 안내

제48조(경과 조치)

① 이 약관이 시행되기 이전에 약정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회원에 대하여는 은행별 내부 기준에 따라 기존 약정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에 따라 카드이용 정지 및 이용한도 감액에 대한 사전 통지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③ 제15조제3항의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금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에 적용합니다.

④ 제15조제4항제3호의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은 2016년 1월 31일부터 최초로 출시되는 부가서비스에 적용합니다.

⑤ 제15조제8항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⑥ 제27조제17항, 제27조제18항 및 제47조제6항은 2025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⑦ 제7조의4는 이 약관 시행일 이후 휴면카드 사유로 회원에게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는 건부터 적용합니다.

⑧ 제15조의2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합니다.

⑨ 제32조 제6항, 제34조 제1항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⑩ 제3조의2제3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부터 적용합니다.

⑪ 제7조의4제4항은 이 약관 시행일 이후 휴면카드 사유로 이용정지가 된 건부터 적용합니다.

⑫ 제14조제1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신규 가입한 회원부터 적용합니다.

⑬ 제15조제10항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부터 적용합니다.

⑭ 제24조제2항은 2021년 1월 29일부터 적용합니다.

⑮ 제34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4조제3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⑯ 제7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전자문서' 추가는 2021년 11월 10일부터 적용합니다.

⑰ 제15조의3은 2021년 11월 30일부터 적용합니다.

제49조(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규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특히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여신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도록 합니다.

제50조(관할법원)

① 이 약관에 터잡은 거래에 관하여 은행과 회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회원의 주소지 또는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은행의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부속약관

2026. 05. 12

제1조(목적)

이 부속약관은 ㈜한국씨티은행(이하 “은행” 이라함)과의 신용카드(이하 “카드” 라 함) 계약에 있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 이라 함)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래관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반복적 거래계약의 처리)

①은행과 별도로 약정된 가맹점에서의 보험료, 통신요금의 결제 등 회원의 신청에 의한 계속적·반복적 거래계약의 처리를 위해 은행은 재발급된 카드번호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의 명시적인 거절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카드가 갱신·대체·교체·재발급의 사유로 신카드가 발급된 상태에서도 구카드 폐기 전까지 –구카드의 유효기간 혹은6개월 중 적은 기간 내- 구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 카드는 유효기간 혹은6개월이 되기 3일전 고객 통지 후 자동 해지됩니다.

제3조(현금카드 기능 이용)

①회원은 은행의 계좌에 대하여 현금카드 기능을 신청한 경우 국내외 현금자동지급기 및 현금자동 입.출금기(이하 양자를 “자동화기기” 라 함) 등 자동화기기에서는 현금카드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현금카드기능과 관련된 사항은 은행의 “현금카드 회원 약관” 및 “국제직불카드 회원약관” 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그 적용으로 인하여 동

약관상 신용카드에 적용되는 내용이 변경되거나 달리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③단, 표준약관 제7조 등에 의하여 분실, 도난, 위변조, 해외이주자, 소재불명, 회원사망, 임의탈회, 본인미수령, 회원요청, 우송중망실, 탈회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이용이 정지, 해지된 경우에는 현금카드 기능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4조(연회비 등의 차등 적용)

연회비 및 카드발급수수료는 회원에게 발급된 카드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카드의 등급별, 종류별 금액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카드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도 은행의 영업정책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연회비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고지하는 날로부터1개월 이후 도래하는 해당 카드의 다음 연회비 청구기간부터 적용되고, 동 연회비가 증가되는 등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신청금액 지급)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신청금액 지급은 회원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은행에서 정한 본인확인 절차 후 회원이 지정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제6조(결제금액의 변동)

①결제일의 결제금액은 이용대금명세서 작성기준일에 확정됩니다. 다만, 이용대금 명세서 작성기준일 이후라도 매출취소, 청구보류 등 결제금액의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결제금액은 이를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회원과 가맹점이 결제취소를 합의하고 회원이 매출취소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회원에 대한 카드대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의 기망행위 등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밝혀진 경우 및 가맹점의 취소전표가 매입되지 않은 경우 카드대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7조(이용한도의 특례)

후불식 교통요금, 항공기 기내판매 등 은행이 지정한 특정 승인 건에 대해서는 이용한도에 관계 없이 무승인거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할부거래 및 분할납부)

①회원은 은행이 할부판매를 지정한 국내가맹점에서2회 분할납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2회 분할납부 및 결제조건 변경에 의한 분할납부는 철회권 및 항변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③할부 이용 대금이 일부 또는 전부 결제된 후 취소전표가 매입되거나, 할부 이용 대금을 선결제 한 경우, 이미 결제한 할부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④일시불 분할납부 등 일시불 이용금액의 분할납부 서비스(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포함)를 이용하는 경우, 일부 일시불 거래에 대한 취소전표가 매입되어도 기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9조(이용대금 선결제 기한)

회원은 결제일 이전에 카드 이용대금을 선결제 할 수 있습니다. 단, 연체금액 선결제 및 타기관 자동이체 회원의 경우 결제일 전일 또는 당일 선결제시 이중 출금될 수 있습니다.

제10조(기한이익의 상실)

회원은 제 예치금 및 은행에 제공한 담보 등에 대하여(가)압류, 가처분 결정, 체납처분, (임의)경매 등 강제집행이 개시되었을 때, 회원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예금부족으로 지급정지된 때 은행으로부터의 통지 또는 최고 등이 없더라도 은행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며 곧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제11조(상계)

제10조의 기한 이익의 상실, 카드이용대금의 변제기한 도래, 표준약관 제29조에 의한 기한 이익의 상실 등을 사유로 회원이 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은행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와 회원의 제예치금 및 기타 채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후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씨티폰,고객센터)

①회원은 은행이 전화상으로 제공하는 신용카드 서비스(이하 씨티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씨티폰(고객센터)은 신용카드 비밀번호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한 본인확인에 근거하여 회원의 전화지시를 실행할 수 있으며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원의 전화지시 내용을 녹취할 수 있습니다.

③씨티폰(고객센터)을 통한 조회 또는 거래 시에 비밀번호 누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모바일 방식을 통한 본인 확인 방법)

회원은 모바일 방식을 통해 회원 본인 여부 확인에 응하거나 거래에 필요한 동의 등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 아래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ID번호/비밀번호
2. 은행이 정한 인증서

3. 사전 등록된 생체 정보
은행은 회원이 사전에 등록한 회원의 지문, 홍채 등 생체 정보 확인을 통해ID 번호, 비밀번호 등 확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생체 정보를 사전에 등록 시 이용자ID 및 이용자 비밀번호 입력, 또는 은행이 정한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제14조(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의 분할납부(할부) 전환)

①은행은 2013년 7월 이전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체결한 회원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계약 해지를 포함한 회원 탈회시 표준약관 제3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에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을 전액 청구하지 않고 분할납부(할부)로 전환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할부)로 전환하여 청구시 은행은 전환예정일, 분할납부(할부)수수료율, 분할납부(할부)기간, 상환방법 등 분할납부(할부)의 주요 내용을 전환예정일2개월 이전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분할납부(할부) 전환 예정사실을 개별 통보합니다.

③분할납부(할부) 전환시 분할납부(할부)수수료율은 회원의 현재 수수료 등급, 분할납부(할부)기간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 및 월 결제금액을 고려하여 은행이 정합니다. 분할납부(할부) 전환 후 분할납부(할부)수수료율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④제2항의 경우 회원이 전환예정일 전영업일까지 분할납부(할부) 전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분할납부(할부) 전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전환예정일 전영업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분할납부(할부) 전환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분할납부(할부) 전환을 처리합니다.

⑤회원이 전환예정일 전영업일까지 분할납부(할부) 전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표준약관 제38조 제2항에 따라 은행은 이용금액 전액을 청구하며, 회원은

은행의 청구를 받은 즉시 결제하여야 합니다.

⑥은행은 분할납부(할부) 전환이 완료된 후 분할납부(할부) 전환일을 포함한 분할납부(할부)의 주요 내용을 전환완료일로부터3영업일 이내 전자우편(EMAIL)과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알려 드립니다.
⑦분할납부(할부) 전환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이5만원 이하이거나, 연체중인 회원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⑧분할납부(할부) 전환은 할부구입이 아닌 상환방식의 변경으로 철회권, 항변권 및 금리인하요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604-04-020 (2026.04.02)